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77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23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신설조항 용어인 ‘임시보호’의 정의를 신설함.
- ‘임시보호자’를 ‘자원봉사자’로 하고,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 골자

- “임시보호” 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 “유기동물”의 정의에 맞게 용어 수정(안 제15조의2)
- 임시보호 기간 동안 시장이 접종 및 치료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5조제2항)

##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

안 제15조의2의 제목 “(유기 동물의 임시보호 등)”을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시보호자”를 “자원봉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를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소요된 비용을”로, “비용을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제2조(정의)(현행과 같음)</p> <p>1. ~ 1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2조(정의)(개정안과 같음)</p> <p>1. ~ 14. (개정안과 같음)</p> <p>15. “<u>임시보호</u>”란 <u>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5조의2(<u>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u>)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u>임시보호자</u>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임시보호기간 동안 접종 및</p>	<p>제15조의2(<u>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u>) ① --- ----- ----- ----- ----- <u>자원봉사자</u>----- ----- -----.</p> <p>② ----- -----</p>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자 선정  
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지원방법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치료 등을 지원하거  
나 소요된 비용을 --  
----- 지원--  
-----.

③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원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